

대한민국대표 장외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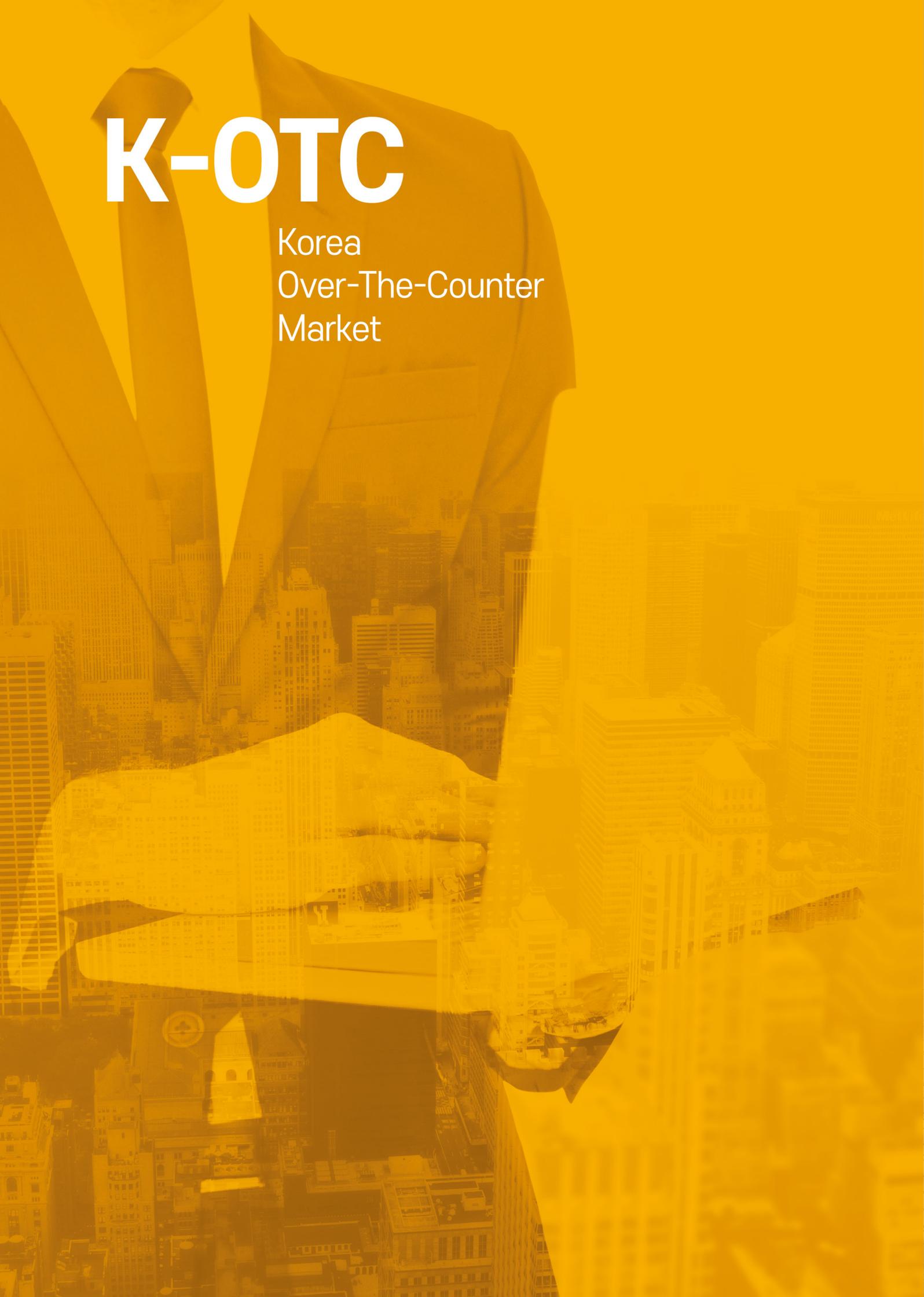
비상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시장

K·OTC

Korea
Over-The-Counter
Market

K-OTC

Korea
Over-The-Counter
Market



K-OTC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세요.

K-OTC시장은 비상장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K-OTC**시장으로 오세요.

K-OTC시장은 비상장주권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주식시장입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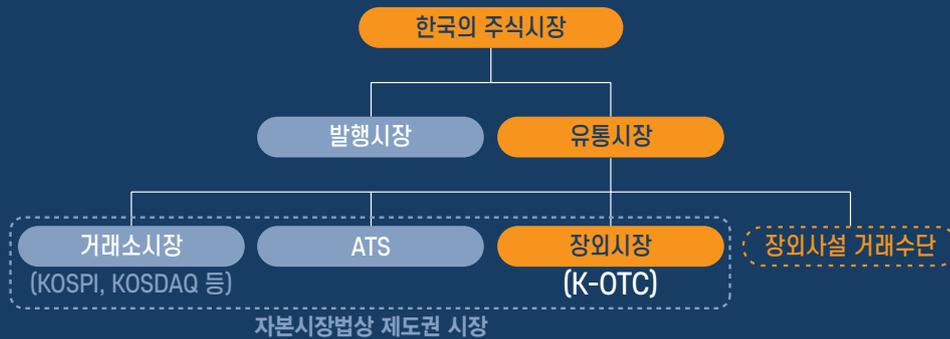
- 04 K-OTC시장 소개
- 05 K-OTC 연혁
- 06 K-OTC시장 진입(등록 및 지정)제도
 - 등록기업부 소개
 - 지정기업부 소개
- 08 K-OTC시장 진입시 기대효과
 - 기업측면
 - 주주측면
- 12 K-OTC시장 공시제도
- 13 K-OTC시장 매매거래제도
- 14 투자자 유의사항
- 16 K-OTCBB 소개
- 18 FAQ

K-OTC시장 소개

K-OTC시장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으로 K-OTC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입니다.

■ K-OTC시장 구조



■ K-OTC시장 특징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 등이 거래되는 시장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140여개사의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 실제거래는 거래가능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 제공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K-OTC연혁

대한민국 대표 장외주식시장!
비상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시장!



K-OTC시장 진입(등록 및 지정)제도

등록기업부 소개

등록법인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입니다.

등록요건

항 목	요 건
재무상태	·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명의개서대행계약	·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식양도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매출액	·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증권형태	· 통일규격증권 또는 전자등록된 주식
기타	·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없을 것 · 「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7호 본문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등록절차

외부감사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반기경과시 반기검토 포함)
정관 정비	주식양도제한규정 삭제 등
명의개서대행회사 계약체결/통일규격증권 발행(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대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소액매출공시서류 등 제출
K-OTC시장 등록 신청	발행회사가 직접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청
K-OTC시장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여부 결정	등록신청 후 10영업일 내 등록여부 결정 (단,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결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이 아닐 수 있음)
매 매 개 시	등록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등록해제요건

- ▶ 등록신청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최종부도 결정 또는 거래정지, 6개월 이상의 주된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전부의 양도, 피흡수 합병, 해산 사유 발생, 회생·파산 등
- ▶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또는 최근 4개 사업연도 반기공시서류 1회 이상 미제출 후 최근 반기에 공시서류 미제출
- ▶ 최근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6회
- ▶ 소액주주 5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1% 미만인 경우
- ▶ 등록해제 신청 시
- ▶ 증권시장에 상장
- ▶ 주식유통 필수사항(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등) 미충족
- ▶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기업부 소개

지정법인은 기업의 신청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 법인입니다.

■ 지정요건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 ▶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공모실적 등)
- ▶ 모집·매출 실적은 없지만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였을 것
- ▶ 신규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지정절차

K-OTC시장 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결정	신규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가 직접 지정결정
매 매 개 시	지정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 지정해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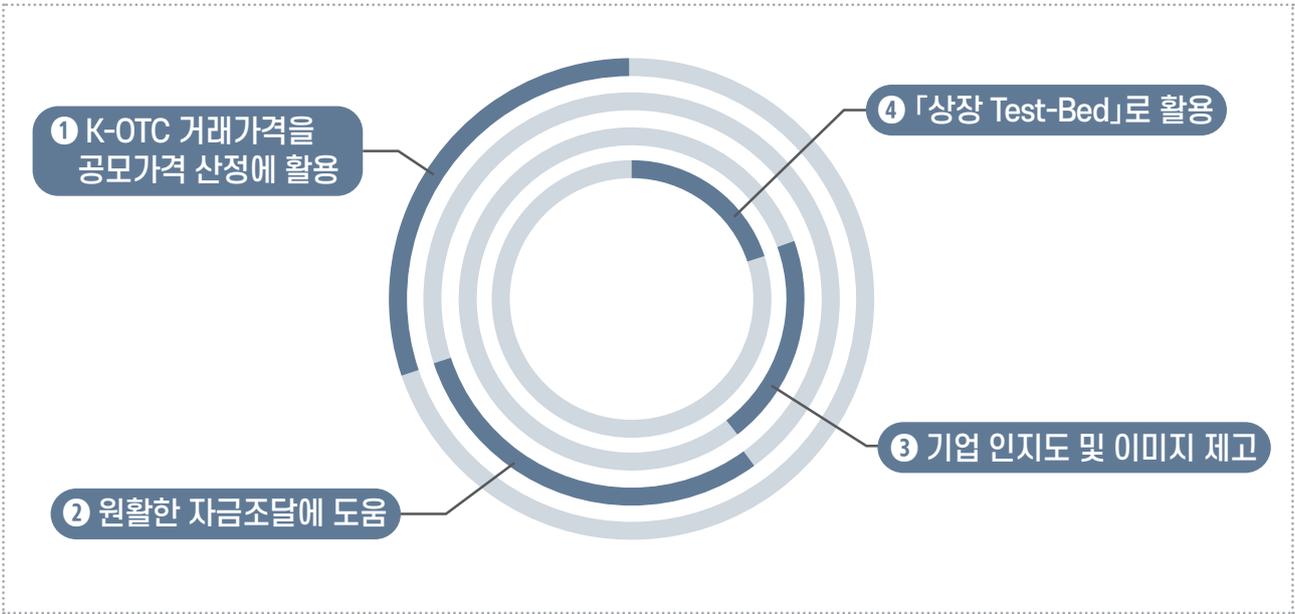
- ▶ 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사항 정정 시 신규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최종부도 결정 또는 거래정지, 6개월 이상의 주된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전부의 양도, 피흡수 합병, 해산 사유 발생, 회생·파산 등
- ▶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또는 최근 4개 사업연도 반기공시서류 1회 이상 미제출 후 최근 반기에 공시서류 미제출
- ▶ 증권시장에 상장
- ▶ 주식유통 필수사항(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등) 미충족

※ 지정법인은 협회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SEIBro) 등을 통해 주요사항공시 확인 가능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정리

구 분	등록법인	지정법인
개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주권을 K-OTC시장에 등록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를 제출할 것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 대상 주권을 지정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할 것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좌동
자기자본	5억원 이상(최근사업연도기준, 단,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최근사업연도기준)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좌동
주식유통관련	· 동일규격증권 또는 전자등록된 주식 ·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좌동
기타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없을 것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업측면



① K-OTC 거래가격을 공모가격 산정에 활용

: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증권사)와의 공모가격 협상 시 참고가격으로 활용

- ▶ 사설수단을 통한 장외거래보다 투명하고 거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상장 후 주가관리에도 유리
- ▶ IPO 소재 노출 시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경향을 보이며, 이는 향후 IPO 마케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②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

: 자금조달 시 K-OTC를 통한 회수가 가능

- ▶ 증자 등 자금조달 시 K-OTC를 통한 회수가 가능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유상증자	3,402	8,036	2,814	2,725	3,802	892	4,973	4,541	13,541	44,726
주식 관련 사채	10	60	22	24	201	548	421	415	6,059	7,760
합계	3,412	8,096	2,836	2,749	4,003	1,440	5,394	4,956	16,600	52,486

* 14년 8월 시장 개설이후부터 22년 12월말 기준

* 유상증자는 보통주, 우선주를 포함

* 주식 관련사채 :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③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주식시장

- ▶ 증권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유리

④ 「상장 Test-Bed」 로 활용

: K-OTC시장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부담없이 상장 Test-Bed로 활용 가능

- ▶ 지정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공시의무 외에 추가되는 의무사항 없음 (단, K-OTC시장 등록기업의 경우 공시의무 있음)

■ K-OTC 기업 대상 각종 혜택

: 기업설명회(IR), 공시설명회, 자본시장 관련 교육 등 개최, 투자용 기술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금융투자교육원 수강료 할인 등

① 기업설명회(IR) 개최 : 비상장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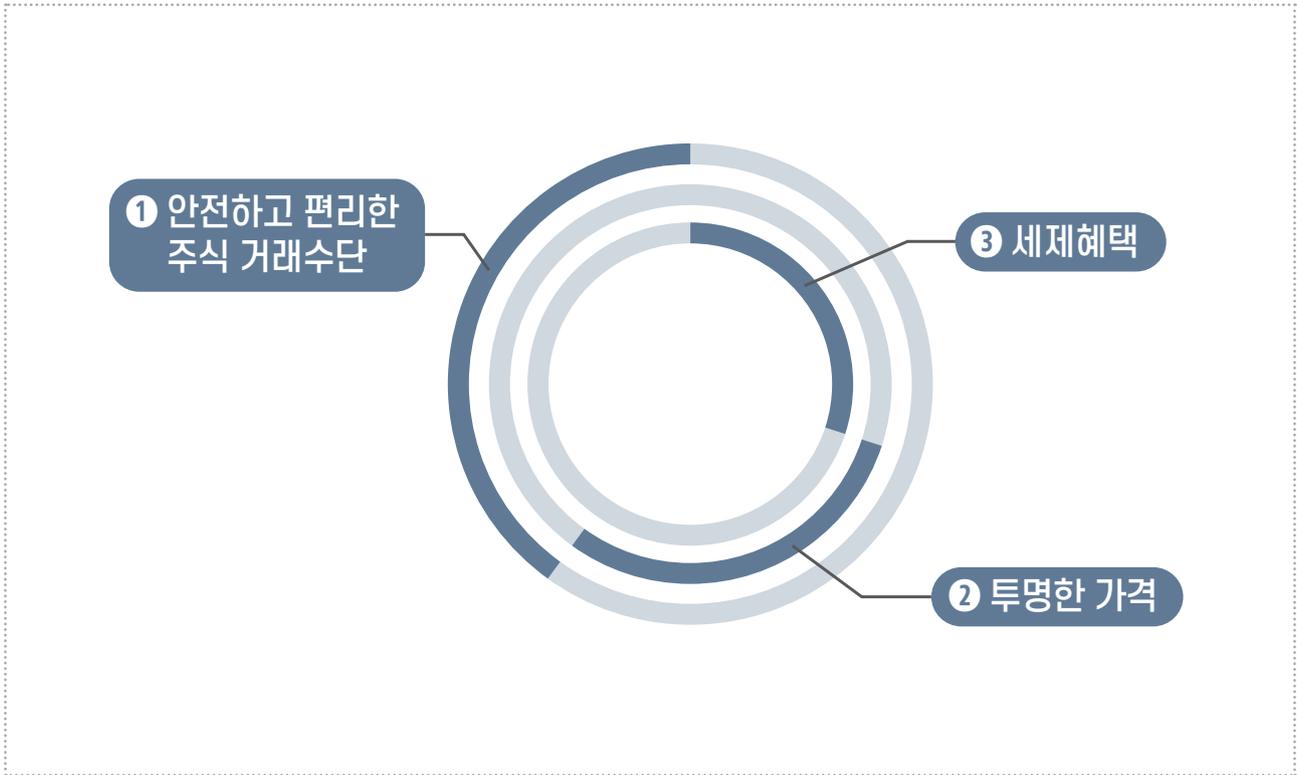
- ▶ 기관투자자·언론 등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K-OTC기업 IR을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② 「투자용 기술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해소

-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 분석하는 '투자용 기술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분석평가 비용(5백만원 상당)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융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부담 (기업은 제세공과금 30만원만 부담)

주주측면



① 안전하고 편리한 주식 거래수단

- ▶ 증권사(HTS, MTS 등)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거래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공
- ▶ 일반 장외거래에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음

② 투명한 가격

- ▶ 하나의 시장에 주권거래가 집중돼 가격이 형성되므로 주주·투자자는 투명한 가격으로 거래 가능
 - ※ K-OTC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
 -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일치하면, 주문수량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체결됨

③ 세제혜택

① 낮은 증권거래세율 (0.2%)

- ▶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코스닥시장과 동일 세율)로, 일반 장외거래(0.35%)보다 낮은 세율 적용
- ▶ K-OTC시장은 결제시점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여 편리하게 납부되는 반면, 일반 장외거래는 매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납부

②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중소·중견·벤처기업 限)

- ▶ K-OTC시장에서 주식 양도 시 다음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주주의 금전적 편익이 극대화
 - i)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 ii)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 ▶ '25년 도입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상장주식·국내주식형공모펀드와 함께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이 기본공제(年 5천만원) 대상에 포함됨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 재산에 편입 (중소·중견기업)



K-OTC시장 공시제도

■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K-OTC시장 공시제도 개요

- ▶ K-OTC시장 등록법인은 K-OTC시장에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K-OTC시장 지정법인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K-OTC시장 등록법인의 공시사항

[정기공시]

결산기 정기공시

- ▶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 ▶ 주주명부요약표,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정기공시서류 제출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 이내)

반기 정기공시

- ▶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반기검토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발행인에 관한 사항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또는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 ▶ 부도, 주된 영업정지, 회생, 합병, 해산, 증·감자, 중소·중견·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및 상실,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 사유발생일 당일 신고
- ▶ 사업목적 변경, 주식분할/병합, 주식배당, 최대주주 변경, 회사채 발행 등의 결정 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조회공시]

- ▶ 협회는 수시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 요구
- ▶ 주가 급등락 시 중요정보 유무의 확인 요구

K-OTC시장 매매거래제도



상장시장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거래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증권사의 HTS/MTS/전화 등을 통해 거래 할 수 있습니다.

■ K-OTC시장 매매방법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매매 체결(상대매매)

-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한 호가에 우선합니다.
- ▶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K-OTC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 비교]

구분	K-OTC시장	코스닥시장
매매방법	상대매매	경쟁매매
매매거래시간	09 : 00 ~ 15 : 30 (시간외 시장 없음)	좌동 (시간외 시장 운영)
호가수량단위	1주	1주
가격제한폭(매매개시일)	±30% (기준가격대비 30~500%)	±30% (최초가격 결정시 공모가격대비 60~400%)
기세적용 여부	적용	좌동
위탁증거금	현금 또는 유가증권 100%	금융투자회사 자율
결제전 매매	가능	좌동
수도결제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좌동
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 자율	좌동

[K-OTC시장 매매 프로세스]



투자자 유의사항

K-OTC시장의 성격

-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신규등록(지정)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K-OTC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K-OTC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업부의 특징

- K-OTC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법인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법원 등에 공개된 기업 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

매매방식

-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상대매매방식). 호가제출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5호가 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낮은 매도호가(높은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불합리한 호가로 인식해 호가중개 시스템에서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율은 100%입니다.
-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 가격제한폭은 $\pm 30\%$ 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수준

-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주요경영사항 발생 시 수시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법인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확인방법

-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시장 홈페이지, 증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https://seibro.or.kr>)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K-OTC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 K-OTC시장은 상장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K-OTC시장은 상장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투자자가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락 거부 등 K-OTC시장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지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록(지정)법인(발행회사), 인수인, 소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투자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0이상을 소유하는자)가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 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참고). 매출신고서 미 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0.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참고),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상장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CBB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호가를 게시하여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입니다.

■ K-OTCBB 특징

모든 비상장기업 주식의 호가게시가 가능합니다.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기업 주식의 호가게시가 가능합니다.

* 실제거래는 거래가능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위험이 높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가장 강조되는 투자처입니다.

어떠한 규제도 없는 위험한 주식거래의 장이므로, 투자자는 부도여부와 부채상황 등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과 K-OTC시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호가게시판으로 투명한 호가 공개와 안정적인 결제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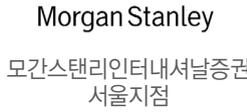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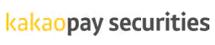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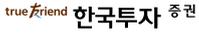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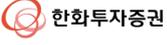


■ K-OTCBB 매매방법

※ 증권사 중개로 K-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수량·가격 등 거래조건협의 후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

- K-OTCBB 홈페이지(www.k-otcbb.or.kr)를 통해 K-OTCBB 호가 및 체결내역을 확인합니다.
- 증권사에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호가)을 제출합니다.
-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 증권사와 수량, 가격, 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매매체결 및 결제를 합니다.

■ K-OTC시장 거래가능 증권사(35사)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DAOL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신증권	 LEADING 리딩투자증권	 meritz 메리츠증권
 Morgan Stanley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부국증권	 BNK 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
 상상인 증권 상상인증권	 신한 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CIMB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	 citi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IBK 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SI 증권 SI증권	 SK 증권 SK증권	 UBS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유안타 증권 유안타증권	 유진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EBEST 이베스트투자증권	 J.P.Morgan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kakaopay securities 카카오페이증권	 KORE ASSET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 증권 키움증권
 하나 증권 하나증권	 하이 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 증권 한양증권	 한화 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증권 현대차증권	 DB 금융투자 DB금융투자	 DS 투자증권 DS투자증권	 KB 증권 KB증권	 NH 투자증권 NH투자증권

■ K-OTCBB 거래가능 증권사(8사)

 대신증권 대신증권	 LEADING 리딩투자증권	 상상인 증권 상상인증권	 유진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ORE ASSET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 증권 키움증권	 현대차 증권 현대차증권	 NH 투자증권 NH투자증권

* 23년 12월 기준

Q :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투자 및 재무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K-OTC시장 홈페이지(www.k-otc.or.kr)에서 우측 Quick Link 중  을 클릭 후 원하시는 기업을 클릭하시면 해당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K-OTC시장 등록법인은 어떠한 내용들을 공시하나요?

정기공시 결산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 및 반기공시서류 (반기검토보고서 포함)

수시공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공시
(부도, 주된 영업정지, 증자 또는 감자, 사업목적 변경,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결의, 최대주주 변경, 회사채 발행 등)

조회공시 수시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또는 주가 급등락이 있는 경우 등 등록법인에게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

Q : K-OTC시장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수수료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결제시점에 증권사가 징수함 (수수료율은 증권사 자율)

증권거래세 K-OTC 종목의 매도 시 매도대금의 0.1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결제시점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함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개정시 과세)

기타 K-OTC시장 주식 양도 시

· K-OTC시장에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① 단,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K-OTC시장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제94조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참고)]

②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

③ 납세의무자 : 매도자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AKE YOUR CHANCE WITH K-OTC

